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등 추가〉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4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등 추가 (안 제27조제2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3.

다. 회 부 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에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기존 3억원 이상이었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검증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들도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이들로 구성된 지도법인도 추가하여 증가하는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등 추가(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 (실무수습 등을 이수 + 결격사유 미해당 + 회계법인 또는 다른 감사반 미소속) <신설>	○ 정산보고서의 검증업무 수행 - (현행과 같음) -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지도법인 (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 상시 고용) - 경영지도사 단체(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 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상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함)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원)¹⁾ 이상인 보조금 또는 간접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들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²⁾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보조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하고 있음.³⁾

아울러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⁴⁾에서 이를 정하고 있음.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①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

동 지침에 따라 감사인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 동 사업 집행 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관련 법령·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 등 검증절차를 진행함.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시기가 기업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에 해당하여 감사인 수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정부는 2023년 6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⁵⁾하였는데, 이에 따라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사업의 수도 2024년 기준 3억원 이상 9,796개에서 1억원 이상 20,238개로 증가하였으며, 1억원 이상의 민간 보조사업의 수도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②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5) 대통령령 제33546호(2023. 6. 20. 시행)

<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 현황 >

(단위: 개,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억원~3억원	9,081(9.0)	9,494(9.8)	10,106(10.4)	10,624(10.7)	10,442(11.3)
3억원~10억원	5,112(5.1)	5,405(5.6)	6,153(6.3)	6,632(6.7)	6,694(7.2)
10억원 이상	2,860(2.8)	3,118(3.2)	3,087(3.1)	3,233(3.3)	3,102(3.4)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는 경우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기관으로 경영기술지도법인·경영지도법인(3명 이상의 재무관리 전문분야 경영지도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이하 같음)⁶⁾ 및 경영지도사 단체(3명 이상의 재무관리 전문분야 경영지도사로 구성. 이하 같음)⁷⁾를 추가하려는 것임.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관련 지도법인 등은 정산보고서 검증 등 회계직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검증 업무수행이 곤란하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검사·증명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법에 경영지도사 등 특정 자격인을 검증기관으로 추가할 경우, 업역 갈등의 소지 및 자격사 관련 법률 간 충돌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을 현행 감사인 외에도 경영기술지도법인·경영지도법인 및 경영지도사 단체(이하 “경영지도사단체등”이라 함)가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진단·재무관리 지도 경험이 풍부하므로, 높은 현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무 친화적인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강한 경쟁을 통한 적정 검증 비용의 형성을 도모하여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검증’이란 현행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⁸⁾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⁹⁾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¹⁰⁾에 따르면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에 대해 관련 증빙을 대사하고 준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므로 인증업무에 해당하나,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로서 ‘검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적

8)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검증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이 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9)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4조(검증기관의 의무 등) ①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기준」을 따른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가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5. 7. 8.

절하다는 입장임.

< 공인회계사 업무 유형 - 인증업무와 비인증업무 구분 >

용어	정의	예시
인증업무	준거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견 표명	
감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여 합리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검토	질문,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 제한적 확신에 대한 의견 표명	반기/분기 재무제표 검토, 지자체 재무제표 검토 등
기타	감사 또는 검토 이외의 인증업무 인증대상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확신수준 달라짐	
비인증업무	인증업무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고, 관련 보고서에 인증, 감사, 증명, 검토 등의 단어 사용 불가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세무대리, 경영컨설팅, 세무컨설팅 등

※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154p)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의 성격은 제3자 인증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음.

둘째,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¹¹⁾하고 있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1)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지도사법”이라 함)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업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세무·회계의 진단·지도 및 이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확인으로 규정¹²⁾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대한 진단·지도를 하여 경영활동의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직무 수행 시 제3자 인증업무를 위한 별도의 독립성 유지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자격사법상으로는 경영지도사가 검증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격사법상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 간 업무 구분 >

구분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 근거 및 주관기관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자격시험 근거	제3조(자격), 제5조(공인회계사 시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도사의 자격)
(시험과목)	(1차)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세법 등 (2차) 재무회계, 세법, 원가관리회계, 재무관리 등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등 (2차)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시행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말한다)

주요역할	기업의 회계감사, 세무신고, 재무제표 작성, 내부통제 검증 등	중소기업의 경영·재무·생산·인적자원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
업무성격	재무정보에 대한 검증과 보고 (감사, 회계처리) 중심	미래 지향적 경영 전략수립, 경영개선 및 컨설팅 중심
전문영역	회계, 세무, 재무분석, 감사	경영전략, 조직·인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기술지도 등
법적권한	법정 감사권 보유 (상장·외부감사 대상 기업 필수)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업무성격	검증과 보고(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지도와 개선(경영활동의 효율성·성과 향상)
전문분야	객관적 검증과 보고(감사·확인)	개선방안 제시와 지도(컨설팅)

※ 자료 : 기획재정부

셋째,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부족에 따른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검증기관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물론, 현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감사인 495개 중 75%에 해당하는 371개가 검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10개의 감사인의 실적이 전체 실적에 39%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산 검증 대상 보조사업수 및 검증기관 참여 현황 >

결산연도	보조사업수*	보조사업수* (감사인 확인)	검증 수행 감사인(a)	전체 감사인(b)	참여율 (a/b)	※ 상위 10개 감사인 실적
2022년	7,742	6,843	307	487	63%	6,843개 중 2,713개(40%)
2023년	18,342	16,294	371	495	75%	16,294개 중 6,279개(39%)

* 시행령 개정(2023.6.)으로 검증대상이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

* 감사인 확인이 가능한 검증 대상 보조사업수

※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에 따르면 소수의 감사인이 정산 검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사인의 참여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정산보고서 검증은 e나라도움 구축과 함께 연중 상시점검체계로 전환되어 매월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검증)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 종료 후인 12월 이후(일반 기업의 결산시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를 현행 감사인 외에 세무법인 또는 3명 이상의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6789호,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관련 보조금법 개정안 계류 현황>

구분	황명선의원안 (제6789호, 2024.12.20.)	박민규의원안 (제12644호, 2025.9.3.)
주요내용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 세무법인 - 3명 이상의 세무사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있는 경우 검증기관 선정 제한·보조금통합관리망 게재 ○ 벌칙 부과 - 정산보고서 검증 거짓으로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추가 -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지도법인 (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 상시 고용) - 경영지도사 단체(재무관리 전문분야 3명 이상 구성)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생략)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 -----
<신 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신 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지도법인으로서 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재무관리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현행	개정안
<신 설> ③·④ (생략)	3. 「<u>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u>」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u>경영기술지도사회에 중소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단체(3명 이상의 경영지도사로 구성된 단체에 한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